

◎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환경부고시 제2019-254호, 2019.12.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03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59호, 2021. 12. 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97,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607,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62,000
폐농약, 폐유독물	644,000
폐석면	645,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514,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52,000
소각대상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99,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46,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52,000
건설폐기물	62,000
의료폐기물	1,397,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37,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462,000
	기 타	297,000
폐윤활유		95,000
폐축전지		102,000
폐드럼		19,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58,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76,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52,000
폐전선		238,000
폐오일필터		55,000
폐타이어		92,000
폐플라스틱 용기		62,000
폐규조토, 폐점토		63,000
폐페인트		389,000
광재	일반	146,000
	지정	152,000
분진	일반	146,000
	지정	152,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합성수지		269,000
폐합성섬유		70,000
폐식용유		51,000
페아연		56,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97,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46,000
	지정	152,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54,000
폐촉매		61,000
폐합성고무		114,000
철강슬래그		52,000
폐주물사, 폐사		59,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52,000
폐섬유류		66,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81,000
	피혁가공잔재물	178,000
폐석회, 폐석고		52,000
폐목재		75,000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의료폐기물		1,397,000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동물성잔재물	237,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유기성오니	176,000

비고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한다.